

2009. 9.

수 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 목 :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발의자 : 김병통 의원 (~~성명은~~ )

외 3인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양소경	양소경	
최기태	최기태	
정영섭	정영섭	
김병룡	김병룡	

##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370
------	------

발의연월일 : 2009. 9.  
발의자 : 김병룡 의원외 3인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 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 제6조(겸직신고)

-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신설)
-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자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 ○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신설)

###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 붙임 : 1.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 표준안 공문 1부 끝.

##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원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 직 내 용	기관· 단체명					
	직 위				겸직(예정)기간	
	보 수	(택일)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소재지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১০৩

제천시의회 의원

(인)

## 제천시의회 의장 귀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시행 2009.4.1】 [법률 제9577호, 2009.4.1, 일부개정]

제35조 (경력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lt;개정 2009.4.1&gt;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현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세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있도록 정하는 직
  10.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신설 2009.4.1>
11.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법령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12.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13.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명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14.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명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신설 2009.4.1>
- [시행일 : 2009.10.2]

**지방자치법**

【시행 2007.5.11】 [법률 제8426호, 2007.5.11, 전부개정]

제35조 (경력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현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영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명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설&gt;</u></p>	<p><u>제6조(겸직신고)</u></p> <p>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자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경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u>&lt;신설&gt;</u></p>	<p><u>제7조(영리행위의 제한)</u></p> <p>의원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부 칙</p> <p>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p>